

서 면 답 변 서

질의의원	김 완 규 의원	소 속	평창군 의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기획실장)	일 자	질의 : 1999년 11월26일 답변 : 1999년 11월27일
회 의	제73회 평창군의회(정기회) 행정사무 감사(감사1일차)		
<p><질의요지></p> <p>○ '98 특수업무수당 부당지급 내역서 제출</p>			
<p><답변요지></p> <p>○ '98 특수업무수당 부당지급 내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 - 붙임 : '98 특수업무수당 부당지급 내역서 1부</p>			

'98특수업무수당 부당지급 내역

(단위:명, 원)

부서별	구분	정당지급액		실지급액		부당지급액		비고
	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
계		68	34,100,000	137	68,660,000	69	34,560,000	
평창읍	읍면동근무수당	11	4,800,000	11	4,800,000			
	장려수당(상수도근무자)			10	4,200,000	10	4,200,000	
	장려수당(쓰레기소각장)			1	1,440,000	1	1,440,000	
	계	11	4,800,000	22	10,440,000	11	5,640,000	
미탄면	읍면동근무수당	7	4,200,000	7	4,200,000			
	장려수당(상수도근무자)			2	1,200,000	2	1,200,000	
	장려수당(쓰레기소각장)			1	1,440,000	1	1,440,000	
	장려수당(오수처리장)			1	1,440,000	1	1,440,000	
	운전업무수당			2	960,000	2	960,000	
	기술업무수당			1	480,000	1	480,000	
계	7	4,200,000	14	9,720,000	7	5,520,000		
방림면	읍면동근무수당	4	1,800,000	4	1,800,000			
	운전업무수당			3	960,000	3	960,000	
	기술업무수당			1	120,000	1	120,000	
	계	4	1,800,000	8	2,880,000	4	1,080,000	
대화면	읍면동근무수당	8	3,250,000	8	2,950,000			
	장려수당(상수도근무자)			7	2,650,000	7	2,400,000	
	장려수당(쓰레기소각장)			1	1,440,000	1	1,390,000	
	계	8	3,250,000	16	7,040,000	8	3,790,000	
봉평면	읍면동근무수당	7	3,600,000	7	3,600,000			
	장려수당(상수도근무자)			4	1,800,000	4	1,800,000	
	운전업무수당			2	660,000	2	660,000	
	기술업무수당			1	120,000	1	120,000	
	계	7	3,600,000	14	6,180,000	7	2,580,000	
용평면	읍면동근무수당	5	3,000,000	5	3,000,000			
	장려수당(상수도근무자)			2	1,200,000	2	1,200,000	
	장려수당(오수처리장)			1	1,440,000	1	1,440,000	
	운전업무수당			2	960,000	2	960,000	
	계	5	3,000,000	10	6,600,000	5	3,600,000	
진부면	읍면동근무수당	11	6,450,000	11	6,450,000			
	장려수당(상수도근무자)			9	5,250,000	9	5,250,000	
	기술업무수당			2	600,000	2	600,000	
	계	11	6,450,000	22	12,300,000	11	5,850,000	
도암면	읍면동근무수당	7	3,750,000	7	3,750,000			
	장려수당(상수도근무자)			4	2,400,000	4	2,400,000	
	기술업무수당			3	1,035,000	3	1,035,000	
	계	7	3,750,000	14	7,185,000	7	3,435,000	
본청 (환경복지과)	장려수당(오수처리장)	0	0	1	1,440,000	1	1,440,000	
농업기 술센터	읍면동근무수당	8	3,250,000	8	3,250,000			
	기술업무수당			8	1,625,000	8	1,625,000	
	계	8	3,250,000	16	4,875,000	8	1,625,000	

확 인 서

제 목 : '98특수업무수당 부당 지급

1. 현 황

소 속	직 명	성 명	구 분	정당지급액(A)		실지급액(B)		부당지급액(B-A)		비고
				개월	금액(원)	개월	금액(원)	개월	금액(원)	
환경 복지과	지방기능 8등급	최순일	장려 수당	0	0	12	1,440,000	12	1,440,000	

2. 위법부당내용

-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(특수업무수당)에 의하면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“별표9”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
-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에 의하면 장려수당은 영 “별표9”의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.하수.폐수.쓰레기처리업무.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
 - 채무과에서는 '98년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하수 . 폐수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이 아닌 본청 환경복지과에서 근무하며 농촌오수처리장 5개소의 (횡계.창동.진부.동산.주진)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자에게 위 현황과 같이 특수업무수당 1,440,000원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있음

· 확인자(관련자)의견